

지역통계의 현황과 발전방안¹⁾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 for Regional Statistics



최봉호 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지역통계는 시/도 또는 시/군/구와 같이 행정단위 기준으로 작성되는 통계와 통근/통학권, 근린생활권, 수도권 등과 같이 기능(권역) 기준으로 작성되는 통계로 구분될 수 있다. 행정단위 기준으로의 통계는 행정구역 경계가 자주 바뀔 수 있고, 행정단위 간 인구수 또는 면적 등이 편차가 커 시점을 달리하거나 국가 간 비교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 반면, 기능(권역) 기준의 통계는 지리정보(GIS)와 결합되어 지도로 표시되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나,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 글은 상기와 같은 두 가지 기준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어떤 지역기준이 되든지 불문하고 지역적으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지역통계가 무엇인지, 부족한 지역통계는 어떤 것인지, 부족한 지역통계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등을 다루고자 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호주,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처럼 지역간 차이(gap)를 보여주는 통계,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략산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성과(outcome)를 보여주는 통계가 갖추어질 수 있겠다.

1. 지역통계 수요현황

지식정보화시대로의 이행이 급진전하면서 통계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지역관련 통계의 경우 지방자치체가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역의 실상이나 지방행정의 수행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가 확대됨에 따라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에서는 과거와 같은 국가발전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지역발전계획이 아니라 독자적인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정확한 지역통계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증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²⁾.

더욱이 최근 참여정부는 국정의 핵심적 정책

1)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통계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방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3항(2005.7.31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역의료보전계획과 연계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지역복지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 통계지표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과제 중의 하나로 국가균형발전을 선정하고 지역의 자발적인 발전전략의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지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신뢰성을 갖춘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통계이용자도 지역별로 세분화된 통계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통계는 16개 시·도별로, 16개 시·도별로 작성되고 있는 통계는 234개 시·군·구별로의 작성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또한 통계자료를 읍·면·동 및 기초단위구별 지형지물정보와 결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통계-GIS 서비스 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도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지역발전의 도모와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의 토대가 되는 지역통계가 시급히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할 시점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즉, 지역통계는 지역발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중요한 인프라 중의 하나인 것임을 알 수 있다.

2. 필요로 되는 지역통계는?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필요로 되는 지역 통계에는 어떠한 통계들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체계를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대략적으로는 지역간 차이를 보여주는 통계

(실업률, 총생산액, 산업구조 통계 등), 지방자치단체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바이오산업, 문화산업, 관광산업 등)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나타내주는 통계(주민 만족 및 건강수준 향상 등)가 많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 요구는 구체적이지 않아 필요로 되는 지역통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프레임워크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호주 통계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지역통계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 즉, 호주 통계청에서는 지역에서 갖추어야 할 통계로 크게 인구통계, 삶의 질에 관한 통계, 지역사회 역량에 관한 통계, 경제통계 및 환경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이 체계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1) 인구통계

- 남녀별/연령별 인구, 장래인구추계
- 전입지/전출지 별 인구이동, 이동자의 특성
- 통근/통학 인구

2) 삶의 질에 관한 통계

- 가) 서비스시설에 관한 통계(각종 시설에 대한 개수, 운용비용, 이용가격, 질(성과))
- 나) 웰빙(고용/건강/주거/소득 등)
- 다) 취약 또는 소외 계층 인구에 관한 통계

이 중 두 번째에 해당되는 웰빙에 관한 통계를 고용/건강/주거/소득 측면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웰빙(고용 측면)

- 남녀별/연령별, 산업별/직업별 취업인구
- 실업률, 실망실업자(잠재적 실업자)
- 취업 경험(취업한 기간, 구직기간 또는 실직기간)
- 근로시간

(2) 웰빙(건강 측면)

- 건강수준(평균수명, 영아사망률, 사망원인, 주요질환별 병원 이용률 등)
- 보건의료시설 분포 현황
- 보건의료비 지출 현황
- 민간 의료보험 가입 현황 등

(3) 웰빙(주거 측면)

- 주택 수, 주택 가격, 월세 지불방법, 빈집 비율
- 주거의 질적 수준(건축년도, 보수 필요성 여부, 방수 등)

(4) 웰빙(소득 측면 등)

- 가구당 총 소득
- 자산(자산 소유 수준, 주식/저축액, 연금 수령액 등)

라) 취약 또는 소외 계층 인구에 관한 통계

- 외국인,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에 관한 통계(정신질환, 약물/알코올 남용, 범죄, 자살 통계 등 포함)

3) 지역사회 역량(Community Strength)에 관한 통계

가) 인적 자본

- 교육정도별 인구, 학위(자격증) 소지자 현황
- 리더쉽, 기술혁신

나) 사회 자본

-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감, 안전감, 소속감
- 지역사회에서의 거주 기간
- 사회봉사활동에의 참여 현황 등

다) 정보/통신 네트워크

- 공공도서관, 신문구독 현황, TV 및 인터넷 보급 현황 등

4) 경제

가) 경제구조에 관한 통계

- 산업별 구조통계

3)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Information Development Plan for Rural and Regional Statistics, 2005.

-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구인 현황, 이직률 등

나) 경제 실적에 관한 통계

- 생산(산업별 생산 물량 및 금액), 지출(소비, 투자 등), 분배(소득)
- 관광 통계(관광객 수, 관광객이 지출한 금액, 관광산업에의 투자 현황 등)

다) 외부와의 관계(Links)에 관한 통계

- 투입/산출 표
- 외국과의 수출/수입, 타 지역과의 이출/이입
- 물동량(철도, 도로, 해운, 항공)

라) 장애요인(Bariers)

- 숙련 노동자 부족 현황
- 사회간접 자본(SOC)에의 투자 등

5) 환경

가) 자연자원 통계

- 물, 광물, 목재 등 자연자원 부존량 및 금액
- 토지 이용(농업용, 임업용, 광업용 등)에 관한 통계
- 물의 소비량 및 공급량에 관한 통계

나) 환경에 미친 영향에 관한 통계

- 물의 염도(level of salinity)
- 토양 오염도
-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통계 등

3. 국내 지역통계의 문제점

첫째, 지역통계가 양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공표되고 있는 통계만을 가지고 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경제 현상을 파악·분석하기에는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몇 가지 통계는 최소한 시/도 단위로 작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로만 작성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시/도별로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나타내주는 통계가 없다. 가계의 소득 및 지출을 보여주는 가계조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보여주는 사업체근로실태조사, 범죄발생 통계, 국민여행실태조사 등이 전국단위로 작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별로 지역주민의 질병상태를 보여주는 통계가 없다. 사망원인통계, 국민건강 및 영양조사, 환자조사 등이 전국단위로만 작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별로 지역 경제의 실상을 보여주는 통

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⁴⁾. 소비 및 투자 관련 지역별 경제지표가 거의 없어 지역 내에서의 소비 및 투자동향을 파악하는데 애로를 주고 있다. 대형 소매점(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시·도별로 작성/공표되고 있으나, 도·소매업 업종별 및 업태별 판매액지수는 전국단위로만 작성되고 있다. 투자관련 지표도 설비투자추계지수, 기계류 내수출하, 내수용 기계류 수입, 건설기성액 등이 전국단위로만 작성되고 있다.

기초적인 경제흐름을 보여주는 산업연관표⁵⁾와 자금순환 통계도 전국단위로만 작성되고 있다.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 활동지수도 전국적으로만 작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동산, 임대, 정보처리, 연구개발, 비즈니스 서비스, 보건, 오락, 물류, 관광 부문 등에 대한 통계가 매우 취약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시·군·구별 지역통계는 사정이 더욱 열악하다 할 수 있다. 사업체기준 노동관련 통계(임금, 근로시간, 비정규직 등 근로실태, 인력부족률, 노동동향 전망 등)가 전무한 실정이다. 각종 시설(백화점, 금융기관별 점포, 식품접객업소, 체육시설, 문화공간, 사설학원, 관광사업체,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계는 단순한 갯수 자료만 가능한 실

정이다. 일부 행정자료의 경우(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자료 등)는 시·군·구별로 통계작성이 가능하나, 현재 시·도 단위로만 공표되고 있다.

두 번째,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방자치 실시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 의해 위임된 사무만을 주로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지역통계에 대한 주인의식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통계작성에 대한 투자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통계 조직 및 인력의 취약성에 있다. 지방에서의 통계조직은 지방자치단체 내 통계조직과 중앙부처의 지방통계조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직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중앙부처의 통계조직은 통계청, 농림부, 노동부 등에서 지역별로 지방청 또는 지방사무소를 설치하여 고유 업무와 관련된 자료수집 기능을 수행함에 비하여, 광역자치단체는 1995년에 통계과 수준에서 통계계 수준으로 축소가 되어 통계조직이 운영되고 있어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2006년 기준 1개 시·도 당 평균 5.2명 수준).

4) 영국 통계청의 한 보고서에서는 필요한 지역 통계자료로 ① 생산성 측정과 관련된 통계(투자, 기술, 혁신, 경쟁력, 기업), ② 경제의 유연성과 관련된 통계(노동시장, 생산시장, 자본시장), ③ 자원배분 현황 및 공공시설에의 접근도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활동에 관한 통계, ④ 소비자물가, ⑤ 삶의 질에 관한 통계를 제시하였다(Christopher Allsopp, Review of Statistics for Economic Policymaking, Dec. 2003).

5)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에서는 2001.1~2006.12 간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산업연관표를 작성 추진 중에 있으며, 2007~2008 년간에는 16개 시/도별로 산업연관표를 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는 1~3명으로 구성된 통계계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많은 경우 통계계 직원이 통계업무를 전담하지 못하고 있으며 타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행정기관인 읍·면·동은 1990년대 말부터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바뀌면서 통계기능이 폐지되어, 통계담당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통계직원은 잦은 순환보직으로 통계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6년 기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의 통계담당직원 556명 중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인 직원이 9.6%인 5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일반 행정공무원이 통계부서에 근무하게 되면 4년 정도 전보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통계담당직원은 너무 자주 바뀌고 있다.

통계청 소속의 지방청/사무소의 경우도 현장에서 전국적인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수집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어, 통계기획 및 분석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거의 없다 라는 문제점이 있다.

세 번째, 지역통계의 정확성이 낮고 활용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고 있는 통계(특히, 보고통계)의 정확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1999년 한일 어업협정 당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도 근해의 어장

별 어획량별 통계가 잘못 보고가 되었기 때문이었다⁶⁾.

또한 대규모의 통계조사나 행정자료에서 지역별 통계작성이 가능하지만, 공표하지 않거나 간행물로 만들어 놓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역통계의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도시기본계획, 장기발전계획 등에 사용된 각종 통계자료가 체계적으로 통계화 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만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4. 지역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자료출처

1) 센서스 및 대규모 조사자료

매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인구주택센서스를 포함 각종 센서스는 지역통계 작성에 가장 중요한 자료 소스가 된다. 특히, 인구주택센서스는 미국 및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도 지역, 특히 소지역(Small Area) 통계를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자료 소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면 제약 상 우리나라 인구주택센서스에 대한 개요, 특징 등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한다. 인구주택센서스 이외에도 매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농어업,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부문의 센서스와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

체기초통계조사 등이 모두 지역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귀중한 자료 소스가 된다.

2) 행정자료의 활용

직접조사에 의한 방법이 아닌 다른 자료출처로는 행정(등록, 신고, 보고 등)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즉, 지역통계를 개발하거나 개선함에 있어 조사통계만이 아니라 행정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한편, 행정자료가 지역통계 작성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개인별 정보가 상업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통계청과 공유 한다 라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행정자료의 통계화는 단기간 내에 조직의 확대 및 예산 증액 등 실현되기 어려운 현재의 여건에서 지역통계의 생산을 확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사장되었던 자료나 보고자료 중 지역통계로 가치가 있는 것이나 신규통계로 이용이 가능한 업무자료를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정부의 공식통계로 승인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합리화와 과학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세무신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건축물대장, 지방재정 시스템, 호적신고, 국민건강보험신고, 고용보험 신고, 범죄신고, 자동차등록신고 자료 등이 지역 통계 작성목적에 보다 많이 활용되도록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3) 소지역 추정기법의 활용

소지역추정기법(Small area estimation)을 이용하여 소지역별 통계(예: 기초자치단체별 실업률, 가구소득 등)를 작성하는 방법도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다. 이는 적은 규모의 표본조사 결과에다 보조정보 등을 이용하여 소지역별로 자료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계적 추정기법이라 할 수 있겠다.

5. 주요 외국의 지역통계 작성/관리 조직 현황은?

프랑스 통계청에서는 지역통계를 전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필요로 하는 통계와 1~2개 지역에서만 필요로 되는 통계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통계청 분청 차원에서 각종 행정자료와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후자에 대해서는 프랑스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하여 통계를 개발하고 있다. 이 경우 통계청은 기술지원을, 지방자치단체는 소요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다른 한편, 프랑스 통계청에서는 2001년 말에 작성된 "INSEE 2004"라는 명칭의 개혁프로그램에 따라, 지방청(24개)의 통계기획/분석능력을 강화코자 지방청에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한 바 있다. 따라서 지방청에서는 자료수집 업무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통계조사를 기획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6) 당시 쌍끌이 선단 연간 어획량 및 복어 채취기 연간 어획고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제로는 6,500톤 및 300억 원으로 사후 보정된 바 있다.

있다.

영국의 경우 지역통계 개발을 위하여 영국 통계청이 주축이 되어 2001/02~2005/06년 5개년 간 86.2백만 파운드(약 1,700억 원)의 방대한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영국 통계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교육부, 보건부, 교통부, 노동/연금부, 내무부 등)와 함께 468개 Local Authority Districts(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 별, 약 9,000개 Ward(우리나라의 읍/면/동에 해당) 별 및 175,434개 Output Areas(England 및 Wales 기준으로 평균 125가구 및 300여명의 인구가 있음) 별로 각종 통계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이 매우 획기적이다.

독일의 경우 연방통계청은 전국적으로 조사된 자료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로 세분된 통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 정부 및 시/읍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한 통계에 대해 자체적으로 지역통계를 만들고 있다.

호주의 경우 아멜라이드市에 있는 통계청의 남부호주 지방사무소에 '농촌/지역 통계센터'를 설치하여 이 센터로 하여금 지역통계 개발업무를 전적으로 맡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7개 지방사무소에는 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지역통계협력팀을 두어 '농촌/지역 통계센터'의 업무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농촌/지역 지역통계센터'와 지역통계지원팀에서 하는 일은 지역통계 수요의 파악, 지방자치단체에의 통계작성 기술지원, 행정자료를 이용한 지역통계 개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지역통계 개발업무를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지역통계의 생산·관리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 통계청 본부에 지역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하는 조직이 있으며, 각 지방통계사무소의 경우 현장에서의 자료수집기능이외 지역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서비스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지방통계사무소에서 본연의 자료수집 업무뿐만이 아니라 타 부처(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주택부 등)에서 의뢰한 가구를 대상으로한 조사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지역통계의 생산·관리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6.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통계청의 기본방향

통계청에서는 지역통계 개발을 위하여 모든 지역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기본통계와 일부 지역에만 필요한 지역특화 통계를 먼저 구분코자 외국의 사례를 발굴 중에 있다⁷⁾.

지역통계 개발을 위하여서는 모든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기본통계와 일부 지역에만 필요한 지역특화 통계로 구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기본통계는 중앙(통계청 등)에서 지역특

화통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추진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필요한 기본통계라 하더라도 중앙차원에서 모든 기본통계를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현재 기본통계 중 많은 통계가 조사로 작성되고 있는데, 기본통계를 지역적으로 세분하기 위해서는 표본규모를 대폭 확대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표본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은 통계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데, 현실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실현되기 어렵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중앙차원에서 지역통계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표본조사에 의한 방법보다는 인구주택센서스와 같은 각종 센서스 결과를 이용하거나 각종 행정(등록, 신고)자료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반면, 표본조사에 의해 지역통계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조사라는 것이 워낙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중앙(통계청 등)과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분담/협조하여 개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중앙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통계를 들 수 있다.

지역소득통계는 생산, 지출(소비, 투자, 수출입 등) 및 분배의 3가지 측면에서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나, 통계청에서는 현재 시/도별로 생산 및 지출계정만 작성하고 분배와 관련된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분배계정은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분배계정 통계를 2009년경

작성/공표를 목표로 하여 개발 중에 있다. 또한 통계청에서는 한국전력 등의 기초 자료를 활용하여 시/군/구 단위까지 전력사용량 지수가 개발/발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현재 작성 중인 전국단위로만 작성되고 있는 임금, 근로시간, 노동력수요 통계 등 노동관련 통계를 시/도 단위로까지 작성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부에서는 2006년 노동력수요동향조사 표본개편 시 지역통계 생산이 가능하도록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등을 검토하고, 2007년 이후 통계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에서는 지역간 연관관계 및 지역내 과급효과분석 등을 통해 지역내와 지역간 경제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6개 권역별 산업연관표를 2006년말까지, 16개 지역별 산업연관표를 2008년까지 각각 작성/공표할 계획이다.

다른 한편, 일부 지역에서만 필요로 되는 지역특화 통계의 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을 하고, 중앙정부(통계청이 주축)에서는 이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사항(조사 설계, 표본추출, 가구명부 및 조사구요도의 정비, 결과분석, 통계방법론 검토, 통계 교육 및 연수 실시 등)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역할분담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통계청에서 시험조사 실시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통계는 다음과 같다. 서울 마포구 및 강남구 사회통계조사,

7) 통계청, 지역통계 개발수요 및 개발방향, 2006G

부산 관광통계 조사, 해운대구 사회통계 조사 및 고용통계조사, 인천 서비스업활동지수, 대전 유성구 사회통계 조사, 경기도 용인시 사회지표조사 및 고양시 고용통계조사, 강원도 관광통계조사, 태백시 사회통계조사 및 고용통계조사, 충북 청원군 고용통계조사, 전북 특화산업통계 및 전주시 고용통계/도소매업/광공업 통계조사, 경남 창원시 고용통계/도소매업/광공업 통계조사 등이 있다.

- GRDP 추계, 수/출입 통계 집계, 관광/중소기업/농어업 분야 통계 연구 및 개발
- 노동력, 임금, 소득 수준 및 소득원, 빈곤, 실업보험 수급자 특성, 범죄 통계 등
- 인구 추정 및 추계, 인구이동,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위탁 조사업무 수행, 모집단 및 표본추출 기법 개발, 조사표 설계, 보고서 발간 등

7. 맺는 말

첫째로, 주요 외국(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사례와 같이 지역통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통계조직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최소한 과 수준의 통계조직 확충을 위한 노력 경주가 필요하다. 즉, 지자체 스스로 필요한 통계개발에 대한 비용 투자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통계담당과에서 해야 할 일들은 일본이나 캐나다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벤치마킹하면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정부의 통계조직(6개 파트 34명이 근무)에서는 주정부 통계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⁸⁾.

- 지역통계 자료 제공업무

두 번째로,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성과 공시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또한 재정성과 공시제도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운영성과를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코자 준비 중에 있다⁹⁾. 이렇게 되면 16개 시/도 및 234개 시/군/구별로 성과가 좋은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통계지표가 된다. 그러나 현재의 지표체계에는 기존에 있는 지표만을 이용코자 하는 체계로서, 진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통계지표가 들어가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삶의 질에 관한 지표나 경제성적표인 GRDP 통계는 지표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표체계에 삶의 질을 보여줄 수 있는 실업률, 빈곤인구비율, 주민소득 (또는 GRDP) 통계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겠다.

세 번째는 현재 거의 전적으로 자료수집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통계청 지방(청)사무소의 기능이 자료수집업무 이외 지역에서 각종 통계를 보급하고 지자체 통계활동을 지원하는 통계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 각 부처에서 조사위탁 요구 시 비용을 충당 받는 조건으로 이를 대행해 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미국 센서스국 지방사무소에서는 조사업무를 위탁받고 있음). 특히,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방대한 조사조직이 필요로 되기 때문에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호주,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처럼 지역간 차이(gap)를 보여주는 통계,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략산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성과(outcome)를 보여주는 통계가 갖추어질 수 있겠다. 문집지

8) BC Stats, Who We Are, <http://www.bcstats.gov.bc.ca/howwe.asp>

9)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평가/공시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발표 자료, 2006.1.24